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14

발의연월일: 2021. 10. 8.

발 의 자 : 이헌승 · 권영세 · 김도읍

金炳旭・김성원・김정재

김태흠 • 김형동 • 김희곤

박수영 · 서병수 · 송석준

아병길 · 윤창현 · 이양수

전주혜 • 조명희 • 조수진

하영제 · 하태경 · 황보승희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용지로서 공공택지와 공공택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 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 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 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민간사업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고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 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 성한 택지의 경우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 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4호바목).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바목 중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한다) 또는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3. (생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2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 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 비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 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지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 서 "공공시행자"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또는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같 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사업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 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

사. ~ 차. (생 략) 25. ~ 29. (생 략) <u>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u> 사. ~ 차. (현행과 같음) 25. ~ 29. (현행과 같음)